파리협정 6조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주요 협력국의 상응조정 법제화 동향 및 기준 비교

파리협정 제6.2조 협력 접근법 중심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 국제이전 허가·상응조정 기준 비교

김필곤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제협력팀장

2026.11.23. (월)



KRIC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파리협정 6조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Contents

주요 협력국은 상응조정을
수반하는 이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 중심 비교

CHAPTER 01 제6.2조 국제규칙과 이행 동향

1.1 국제적 사용 허가·최초 이전·상응조정
1.2 COP31 제6.2조 이행 동향

CHAPTER 02 주요 협력국의 상응조정 법제화 동향

2.1 베트남 · 사업 유형별 이전 상한과 승인
2.2 인도네시아 · 소관 부처 추천과 환경부 허가
2.3 네팔 · 자국 NDC 계상과 판매·이전 동의

CHAPTER 03 상응조정 및 국제이전 기준 비교

3.1 국가별 허가·이전·상응조정 기준 비교
3.2 비교 결과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시사점

CHAPTER 01

제6.2조 국제규칙과 이행 동향

국제적 사용 허가 · 최초 이전 · 상응조정

타국 NDC용 실적은 최초 이전과 NDC 사용 시 조정함

100 tCO_2e가 최초 국제이전되고 전량 사용되면, 유치국은 100을 가산하고 사용국은 100을 차감함

허가	발급	최초 이전	NDC 사용
사용 목적·대상·범위 결정	검증 감축량을 단위로 발급	타국 NDC용 첫 국제이전	사용국 NDC에 실적 사용
허가서(LoA)	발급·등록부 기록	등록부·연례정보	BTR 제6조 정기정보

※ 허가와 발급의 순서는 적용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치국		사용국	
+100	감축성과 발생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산	−100	자국 NDC에 사용한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상응조정 예시임.

상응조정을 통한 이중계상 방지 — 같은 감축실적이 유치국과 사용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함

최초 이전국(유치국)은 허가한 용도에 따라 최초 이전일을 판단함

최초 이전국은 최초 이전이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상응조정을 적용함

허가된 사용 목적	최초 이전일 판단 기준
타국 NDC 달성	감축실적이 처음 국제이전된 때
기타 국제감축목적	최초 이전국이 지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① 사용 허가 ② 발급 ③ 사용 또는 취소
같은 실적에 두 용도 모두 허가	두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 중 먼저 발생한 때

날짜 예시 5월 10일 감축실적 발급 · 6월 20일 첫 국제이전 (최초 이전국은 발급 전에 사용을 허가함)

최초 이전국이 타국 NDC 달성용만 허가
최초 이전일 6월 20일

최초 이전국이 두 용도를 허가하고 기타 목적의 기준을 '발급'으로 지정
최초 이전일 5월 10일

'유치국의 감축실적 사용 허가 문서(LoA 등)에서 확인할 항목

사용 목적·대상, 사용 허가 감축실적 수량(문서에 명시된 경우), 허가 유효기간·감축성과 발생연도, 등록부·협력적 접근법 식별정보, 용도별 최초 이전 기준

참고자료 decision 4/CMA.6, paragraphs 3–9 and 11–15 / decision 2/CMA.3, annex, paragraph 2(a) and (b)

협력적 접근법 66건에 대한 정보와 허가정보 71건이 제출됨

2026.11.14. 기준 CMA 8 의제 16(a) 결정문 초안에 수록된 건수와 당사국 수를 제시함

협력적 접근법

66건

정보가 제출된 협력적 접근법

허가자료

71건

21개 당사국이 제출한 허가정보

※하나의 협력적 접근법에 여러 건의 허가정보가 제출될 수 있음.

집계 기준	**협력적 접근법과 개별 허가를 각각 집계한 결과임.** 같은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한 당사국이 각자 허가할 수 있어 하나의 접근법에 여러 건의 허가정보가 제출될 수 있음.

보고 유형별 제출 당사국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s)	26개국
갱신 초기보고서(updated initial reports)	3개국
연례정보(annual information)	9개국
BTR 부속서 제6조 정기정보 (Regular information)	3개국

자료별 확인 사항

허가 범위 및 상응조정 방식

초기보고서 및 함께 제출한 허가서

실제 이전 및 취득

등록부 거래기록 및 제6조 연례정보(AEF) 확인

상응조정 반영 내역

BTR 부속서 제 6조 정기정보 및 공통표양식(CTF Table 4)

참고자료 CMA 8 의제 16(a) 결정문 초안(2026.11.14.) 제2항 및 각주 3–5 / Decision 2/CMA.3, annex, paras. 18(c), 18(g), 20, 21–23 and 29 / Decision 5/CMA.3, annex II, Table 4

CHAPTER 02

주요 협력국의 상응조정 법제화 동향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네팔

상응조정을 수반하는 국제이전 상한은 목록별 90%와 50%임

감축실적 생성기간별 발급량에 상한을 적용함. 사업별 승인 물량은 농업환경부의 국제이전 승인서(Form 10)에서 확인함

부속서 I 목록별 법정 상한

예시) 일정 생성기간에 1,000 tCO_2eq를 발급받은 경우

목록 01 지열발전, 해상풍력, 매립가스 회수·이용 등 우선대상 **최대 90%**



같은 생성기간 발급량의 최대 90%

법정 상한 적용 시 최대 900 tCO_2eq

목록 02 바이오매스 발전, 퇴비 생산, 육상 천연림 REDD+ 등 장려대상 **최대 50%**



같은 생성기간 발급량의 최대 50%

법정 상한 적용 시 최대 500 tCO_2eq

제6.2조 사업 등록 및 국제이전 승인 조항

제9조	사업 구상 등록 승인 본사업 등록 승인
제12조	감축실적·탄소크레딧 발급 및 인정
제13조	국제이전 승인 신청(Form 09) 국제이전 승인서 발급(Form 10)

국제이전 승인 결과 통보

농업환경부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근무일 기준)

소관 부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사용범위를 추천하고, 환경부는 최종 허가함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감축실적 거래에는 국제적 사용 허가와 상응조정이 필요하며,
소관 부처는 사업신청자가 요청한 국제적 사용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에 추천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

국제적 사용 허가 추천 신청

탄소단위 발급에 필요한 추천 또는 승인 확보
탄소단위 발급 전후에 소관 부처에 신청

발급 추천서 또는 승인서

제16조·제17조제1항·제18조

사업 소관 부처

신청 범위 심사 및 추천

전부 또는 일부 수용 시 허가 추천서 작성
탄소단위 등록부(SRUK)를 통해 추천서 송부

국제적 사용 허가 추천서

제17조제2~6항

환경부·환경관리청

국제적 사용 허가

소관 부처 추천에 근거해 국제적 사용 허가
허가와 상응조정 내역을 SRUK에 기록

환경부 허가서 및 적용 범위

제17조제7~9항·제30조제3항

소관 부처의 검토·추천 기간

소관 부처가 국제적 사용 허가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추천서를 보낸 날까지의 기간이며,
제17조에는 이 단계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환경부·환경관리청의 허가 기간

소관 부처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최대 15일(근무일 기준)

참고자료 대통령령 제110/2025호 제68조제1~2항 / 환경부·환경관리청령 제10/2026호 제16~18조·제30조제3항 및 부속서 (2026.7.6. 시행)

검증·발급량의 5%를 네팔 NDC에 계상함

잔여분을 판매·이전하려면 지정국가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3조 협정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적용함

검증·발급된 탄소크레딧



5%

네팔 NDC 계상분

발급량 1,000톤이면 50톤

95%

NDC 계상 후 잔여량

5% 계상 후 950톤

네팔 정부는 관보 고시를 통해 NDC 계상 비율(제14조제1항, 5%)을 조정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 제1차 개정은 의견수렴 공고 확인. 2026.11.18. 기준 개정 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잔여량의 판매·이전 조건

제16조제4항 판매에 따른 이전 동의

크레딧을 판매해 이전하려면 DNA의 동의를 받음.

제16조제2항 국제 탄소거래의 상응조정

지정국가기관(DNA)이 상응조정을 적용함.

제3조제7항 협정 조건

소유권 이전·상응조정은 해당 협정 조건을 적용함.

제15조제1·2항 판매 수수료

(15조제1항) NDC 계상 후 잔여분 판매 시 톤당 100루피를 납부함.
(15조제2항) 제3조에 따른 탄소거래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 수수료는 해당 협정의 수수료 조건을 적용함.

참고자료 탄소거래규칙 2082 제3조제7항·제12조제4항·제14~16조·제21조제1항 (2025.12.8. 공포·시행) / 제1차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CHAPTER 03

상응조정 및 국제이전 기준 비교

국가별 기준 비교 · 국제감축사업 시사점

국제이전 조건과 상응조정 이행 방식이 국가별로 다름

베트남은 목록별 이전 상한, 인도네시아는 추천·허가 범위, 네팔은 NDC 계상분과 잔여분의 판매·이전 조건을 확인함

비교 항목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적용 대상	제6.2조 사업의 상응조정 수반 국제이전 (제13조제1항)	제6.2·6.4조 국외 상쇄거래 등 허가와 상응조정이 필요한 거래 (제8조제5항)	탄소크레딧의 판매에 따른 이전 (제16조제4항)
심사·허가·동의 주체	농업환경부가 국제이전을 승인 (제5조제1항·제13조제2항)	소관 부처가 신청을 전부·일부 수용 또는 거부 수용 시 추천, 환경부·환경관리청이 최종 허가 (제17조제2~7항)	지정국가기관(DNA)이 판매에 따른 이전에 동의 (제16조제4항·제21조제1항)
물량 기준·확인 문서	감축실적 발생 기간별 발급량 기준 목록 01 최대 90%·목록 02 최대 50% 사업별 승인 물량은 Form 10에서 확인 (제6조제1항·부속서 I·II)	추천서에 사용 목적·총 배정 한도 기재 감축실적 발생연도별 수량 기재 최종 허가 문서에서 허가 범위 확인 (제17조제3~7항 및 부속서)	검증을 거쳐 발급된 크레딧의 5%를 NDC에 계상 정부는 관보 고시로 계상 비율 조정 가능 잔여분은 DNA 동의·해당 협정 조건 확인 (제3조제7항·제14조제1·2항·제16조제4항)
신청·처리기한	사업 대표기관이 농업환경부에 Form 09 제출 감축실적 발급 후 국제이전 승인서 발급 신청 접수일부터 25일(근무일 기준) 이내 결과 통보 (제5조제1항·제13조제1·2항)	발급 추천·승인 확보 후 실제 발급 전후에 요청 소관 부처의 처리기한은 제17조에 명시 없음 허가 기관의 추천서 접수일부터 최대 15일(근무일 기준) (제16조·제17조제1~8항·제18조)	판매에 따른 이전 전 DNA 동의 제16조제4항에 동의 처리기한 명시 없음 (제16조제4항)
판매 수수료·재정 의무	제6.2조 협정에 국제거래의 재정 의무를 명시 (제8조제2항(d))	허가 수수료는 제17~18조에 명시 없음 (제17~18조)	잔여분 판매 시 톤당 100루피 제3조 협정 적용 시 판매 수수료는 협정에 따름 (제15조제1·2항)
상응조정 적용	파리협정에 따라 상응조정 적용 (제5조제3항)	국외 거래 중 허가·상응조정 대상에 적용 (제8조제5항(a))	DNA가 상응조정 적용 제3조 협정이 적용되면 협정 조건에 따름 (제16조제2·3항)
기록·보고	국제거래 내역을 국가등록부에 기록·공개 (제4조제2항)	거래·허가·상응조정 내역을 탄소단위 등록부(SRUK)에 기록 (제17조제9항·제30조제2~4항)	거래는 국가 탄소등록부에 기록 사업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DNA 보고 DNA: UNFCCC에 상응조정 내역 격년보고 (제13조제1항·제20조제1·3항)

참고자료

베트남 정부령 112/2026/NĐ-CP 제4·5·6·13조 및 부속서 I·II

인도네시아 환경부·환경관리청령 제10/2026호 제8·16~18·30조 및 부속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110/2025호 제68조

네팔 탄소거래규칙 2082 제3조제7항·제13·14·16·20·21조

계약 전에는 국제이전 조건을, 이전 후에는 실제 이행 내역을 확인함

계약체결 전에는 인도할 감축실적의 물량·사용 목적·발생연도를 검토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승인·허가·동의를 계약상 인도 조건에 반영함.

국제이전 후에는 실제 이전·취득 물량을 대조하고, 해당 실적에 대한 상응조정이 당사국의 NDC 달성 평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함

검토 단계	확인할 사항	확인 문서
사업 선정	사업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이전 경로와 물량 기준이 적용되는가?	적용 법령·대상 목록·탄소거래 협정
기관 협의	누가 추천하고, 어느 기관이 최종 승인·허가하거나 이전에 동의하는가?	✓ 베트남 국제이전 승인서(Form 10) ✓ 인도네시아 소관 부처 추천서·최종 허가 문서 ✓ 네팔 지정국가기관(DNA) 동의 확인 자료
계약·이전 준비	계약 물량·사용 목적·감축실적 발생연도를 대조했는가? 허가·동의가 진행 중이면 취득 조건을 반영했는가?	승인·허가·동의 문서, 적용 협정, 구매계약
이전 후 확인	실제로 몇 톤을 이전하고 취득했는가? 이전한 실적에 대한 상응조정을 국가 감축목표(NDC) 달성 평가에 반영했는가?	✓ 실제 이전·취득 물량 ✓ 등록부 거래기록 및 제6조 연례정보(전자양식 AEF) ✓ 상응조정 반영 내역 ✓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제6조 정기정보

시사점 사업 초기부터 협력국별 국제이전 가능 물량을 검토하고, 필요한 승인·허가·동의를 계약상 인도 조건에 반영하며, 이전 후에는 당사국의 공식 보고에서 상응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Q&A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